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59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이용우·박민규·민병덕

김 윤·이주희·박지혜

박정현·임미애·백승아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의 권고 또는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치료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

생들의 신체적 · 정신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상담, 치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또는 제2항에 따른”을 “또는”으로, “학생에게 상담”을 “학생에게 검사·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항”을 “제1항”으로, “상담”을 “검사·상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을 “권고, 치료 권고·지원,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로, “상담·치료”를 “검사·상담·치료”로 한다.

1.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 권고
2. 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

3.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의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지원
- ② 교육감은 학생의 미디어 이용습관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u>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 ----- ----- -----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u>----- -----. <u>1.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 권고</u> <u>2. 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u> <u>3.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u>

<신 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

있는 학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의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지원

② 교육감은 학생의 미디어 이용습관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상
담, 치료-----

-----.

④ -----

-----또는-----

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u>학생에게 상담</u>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u>제1항·제2항</u> 및 제4항에 따른 <u>상담·치료</u>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u>권고</u>,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u>상담·치료</u>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학생에게 검사·상담</u>----- -----. ⑤ -----<u>제1항</u>----- -----<u>검사·상담</u>----- ----- -----. ⑥ -----<u>권고</u>, 치료 권고·지원, 제2항에 따른 <u>조사의 방법·절차</u>----- <u>검사·상담·치료</u>----- ----- ----- -----.
--	---